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. 3. 17 선고 2016가단2524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

피고B

변론 종결2017. 3. 3.

판결 선고2017. 3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대 50,423.2m² 중 별지 배드민턴장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㉠ 부분 지상 조립식판넬조 창고시설 5m²,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㉡ 부분 지상 컨테이너 창고시설 18m²를 각 철거하고, 위 대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박미선

별지